

입법의견서

발행일 2021.03.0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 각종 권고 미이행
정책정보 및 신원조사 직무 유지
제정안에 반대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차

목차	2
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3
정책정보의 삭제 요구	9
신원조사의 삭제 요구	13
집회시위 관련 정보의 삭제 요구	16
그밖의 문제	19
결론 : 제정안에 반대	21

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 경찰은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왔음. 또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라 치안정보 수집 외에도 정책정보 수집, 집회·시위 관리,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등의 임무를 맡아 왔음.

(구) 경찰 관련 법률에서 경찰 정보활동 근거 규정

(구)경찰법	(구)경찰관직무집행법	(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14조(정보국)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그러나 경찰이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그런 만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소위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 등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017년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8년 4월 28일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함.

<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 주요내용 >

분야	권고안 주요내용
정보국 기능 재편	-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
정보조직 개편	- 정보국 명칭 개정 - 직무범위를 치안정보에서 공공의 안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 - 정책정보·신원조사 업무 이관 - 정보인력의 축소 재배치 - 경찰의 대외협력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 -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관
정보경찰의 법적 근거 마련	- 수권 규정 마련 - 민간영역 상시출입과 개인·단체 사찰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 마련
정보활동 통제강화	-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 실시,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 - 정보활동에 대한 시민감시기구의 감시 실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원칙을 준수하는 등 문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이 권고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힘. 특히 논란이 많았던 정책정보, 집회시위 관련 정보, 신원조사에 대하여 “조정·이관” 하되, 정책정보는 현 정부 임기내, 집회시위 관련 정보는 2019년 내 조정·이관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음.

<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 계획 >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한다.

2. 향후 일정

<정보국 기능 재편>

- '치안정보' 용어 변경·직무 범위 신설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년 8월 8일
- 경찰청 감사관실 정기사무 감사 수감방안 마련 ⇨ '18. 8월 8일
- '경찰위원회 실질적 통제(기획조정)·시민통제(수사)'는 해당 기능의 권고안 이행과 연계하여 이행 방안 마련

<민간시설 출입 중지, 기구·인력 축소>

- 정당·언론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 중단은 즉시 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출입 지침 마련 ⇨ '18.10월 8일
-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은 '18.10월 8일 완료로 목표로 추진하고, 그 결과는 국가정보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인력 감축, 명칭·활동·조직 등 재편, 대외협력·집회신고 관련 업무 이관’ 등에 반영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2호(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삭제하고, 경직법 개정(직무범위 규정 신설)과 연계하여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로 재정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및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5호(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18년 限 관계부처(부서) 업무 협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정·이관

단,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현 정부 임기내,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는 ‘19년 限 조정·이관 추진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활동 수권 규정’·‘권한 남용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년 限

- ‘민간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공공기관 출입 요건’ 등 구체적인 정보활동 기준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정보활동 규칙’(경찰청 훈령)으로 제정 ⇨ 18년 限

- 별관 정보경찰 사무실 본관 이전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을 수립(‘18년 限), 본관 청사 확보 경과에 따라 단계적 이행

<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 ‘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 ‘18년 限

- ‘정보실명제·이력제’ 등을 포함한 ‘정보기록물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건문 규칙 개정 추진 ⇨ ‘18년 限

- 경찰 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국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1. 1.)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시행 2021. 1. 1.)을 통하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함. 그러나 이 규정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기에 하위 법령 제·개정에 있어 정부와 경찰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경찰 개혁의 과제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0. 12.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하여,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음.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법문에서 열거하지 않은 관계로 반영되지 못한 이 의견은 후속 하위 법령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었음.

○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기존에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에서 경찰 정보활동의 일부로 규정하여 관행적으로 해온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직무범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3.)

- 최근 경찰은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하위 대통령령 입법 관련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에서는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경찰청 인권위원회 및 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처도록 하고 있음. 과거 수많은 인권 침해로 인해 개혁 요구에 직면한 경찰이 이 정부 들어 스스로 인권 개선과 민주적 통제를 표방하며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였음에도, 문제의 정보경찰 관련 하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이들 기구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조차 국민 앞에 일체 비공개하면서 개혁을 무력화하는 모습은 규탄받아 마땅함. 지금이라도 경찰은 경찰 인권제도와 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2021. 2. 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제정안과 관련한 대통령령 초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2020. 12. 16.)는 ▲공공갈등과 다중은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한 정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최소침해) 원칙을 위배하였고, ▲정보의 수집 범위와 기준 ▲임의적 정보 판단에 대한 포괄적 수권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정보처리기준의 부재 ▲정보 결합의 가능성 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평가 내용을 제정안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히 최근 경찰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기계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통제 실패는 장래 국민 일반에 대한 시시콜콜한 사찰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가의 정보수집으로 인한 기본권 주체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
경찰이 수집한 막대한 양의 정보에 대하여 관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부재하고 정보수집 담당 부서가 일부 기능에 집중화되어 있어 정보의 결합을 통해 수사기관 등 영역에 걸쳐 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

- 특히,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는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대통령령의 위임 범위가 “경찰의 정보 업무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한 정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바, 삭제를 권고하였음.

개정법률 제8조의2는 제2조 직무의 범위에서 정보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 절차와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원칙적으로 개정법률 제2조 4호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른 직무의 경우 불가피하게 정보 업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보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찰관이 정보경찰관이 됨으로써 정보경찰국가, 즉 경찰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만큼 모든 국민의 모든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는 감시국가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2020. 12. 29.)

- 제정안은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후속조치로서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입법예고되었음. 그러나 이 정부에서 논의된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 개혁기구 및 인권기구의 권고는 물론 경찰청 스스로 밝힌 정보경찰 개혁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찰을 규탄하고 이 제정안을 반대함. 경찰은 제개정 이유서에서 “정책정보, 신원조사를 타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정보체계의 큰 틀에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예정”이라며 자신들 스스로는 업무 이관 권고와 계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힘.
- 또한 경찰은 이 제정안보다 먼저 정보경찰 사무 관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31346호, 2021. 1. 1. 개정시행)하였는데 여기서도 정보경찰의 직무로 정책정보, 집회시위 관련 정보, 신원조사 관련 정보 활동을 존속하였음. 이는 그간 국민과

인권기구들이 요구해 온 정보경찰의 개혁 요구를 기관 자체적으로 무력화하는 내용으로서 이 제정안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마땅함.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공공안녕정보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협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그 밖에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정책정보의 삭제 요구

-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활동에 대한 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5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해당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와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신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

- 더불어 관련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은 공공안녕정보국장의 직무로 “국민의...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정책정보 활동을 다른 부서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였던 바, 위 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경찰위원회 권고 25.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2018. 4. 27.)

II. 권고 내용

2. 경찰은 헌법질서에 반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정보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한다.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파견과 상시출입 등의 방법으로 하는 동향 파악, 사찰은 즉각 중단하며, 기구와 인력은 이에 맞게 대폭 축소한다.

①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671호) 제14조(정보국)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㉔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는 정부 차원의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의 이관·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진행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정책정보에 대한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던 바, 위 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는 '18년 限 관계부처(부서) 업무 협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정·이관 ...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현 정부 임기내 조정·이관 추진

-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정보경찰의 업무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의 작성(22.5%)이었음. 대외협력(20%), 집회관리(12.3%)가 그 뒤를 이었으며,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범죄정보'는 단지 1.3%에 불과함¹. 청와대에 보고하는 '정책정보'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A 보고'와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실 및 총리실 등에 보고하는 정책자료 등이 있음. 경찰청 정보국 정보국장, 정보심의관, 정보2과장을 비롯해 정보국 근무자들은 평소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정보의 사용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초를 파악한 후 그와 같은 국정 기초를 반영하여 정책정보 작성 업무를 수행함. 청와대와 정보경찰과의 관계가 긴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로 파견한 경찰(비서관, 행정관)을 통해서 인적으로 연결되고, 청와대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 보고서가 높은 점수를 받고, 이를 통해 승진에 반영되는 인사구조에 기인함.
- 이런 문제는 현재 재판 중인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2016년 선거 개입 사건에서도 드러남. 2016년 4·13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판세와 여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선거 판세분석 보고서'와 '권역별 보고서'를 작성함. 전국적으로 3,000명에 이르는 정보경찰들이 지역별로 사전투표소에 투입돼 조직적으로 투표 상황을 염탐한 것으로 보임.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하 정 치안감)은 이렇게 작성된 권역별 '사전투표 보고서'를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아 '윗선'에 보고함.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의 가교 구실을 하며 '선거개입' 문건을 주고받은 정 치안감과 박기호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은 박근혜 정부 때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했음. 정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개입 문건 작성은)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주장함.
- 정보경찰은 범죄정보가 아닌 정치권 동향이나 밑바닥 민심 파악을 '정책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해옴. 선거 개입 및 사찰 논란이 거듭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정보 생산을 총괄하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 요구가 커짐.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개혁소위에서도 정보국 폐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이뤄지지 않는

¹ KBS 2019.03.03. [범죄 정보' 1.3% 불과... "정보국 폐지" 추진에 흠 '반대'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76390>>

상황에 경찰 정보까지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후퇴한 개혁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함.²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2.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경찰의 업무범위라고 보기 어려운” 정책정보를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음.

경찰이 정책정보를 다루게 되는 경우,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미리 파악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나,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경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기능인 치안에 관한 사무 여부, 개정안 제2조 제4호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책정보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업무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9년 발견된 경찰청의 국가인권위원회 사찰 문건에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동향 정보 외에도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대응 방향, 관련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경찰의 기능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2020. 12. 3.)

- 특히 국회에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2021. 3. 23.)에 신설된 제8조의2(정보의 수집)에서는 경찰의 수집 대상 정보를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였음. 따라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이 없는 정책정보는 이 법에 따른 수집대상이 될수 없음에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이를 포함한 것은 중대한 법적 흠결에 해당함.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 이후 경찰청이 입안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2020. 12. 16.)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한 정보’는 ▲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최소침해)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평가를 내렸음. 제정안은 대통령령 초안에서 ‘...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 일부 작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등 수정하고 단서를

² 한겨레 2019.05.03. [\[단독\]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보고서' 썼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529.html#csidx449abca16a7d4f09bf882ebd08cd76e)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529.html#csidx449abca16a7d4f09bf882ebd08cd76e>

추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여전히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해 ... 필요한 사항” 등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래 목적과 범위에 맞게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평가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결정(2020. 12. 29.)을 통해 대통령령에서 정책정보 관련 내용의 삭제를 권고함.

정책정보 관련 내용의 존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것이며 경찰청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약속도 스스로 어긴 것이다.
따라서 정책에 관한 정보는 위험방지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집해야 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며, 정책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행정부 내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건 개정령안에서 정책정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2020. 12. 29.)

- 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경찰청은 정보경찰이 정책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책은 이해대립. 집회로 이어지거나 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 등으로 인한 업무누수. 사각지대 등이 존재하여 점검이 필요하나, 현재 경찰 외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그 사례로서 정보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하여 ▲방역 미비점·사각지대 ▲감염확산 요인 ▲자가격리 위반 실태를 각급 관계기관에 제공, 재난대응 등 지원하였다는 입장임(경찰청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견).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보 활동은 질병관리본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처벌 대상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정상적임.
- 결론적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그에 대한 경찰청 스스로의 계획,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및 최근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취지와 위배되고, 정보경찰의 사찰 및 선거 개입을 허용하는 제정안 제5조 제7호 및 관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제5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함.

신원조사의 삭제 요구

- 정보경찰의 신원조사 활동에 대한 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5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

- 더불어 관련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은 공공안녕정보국장의 직무로 다음을 규정하였음.

6.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정책정보 활동을 다른 부서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였던 바, 위 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경찰위원회 권고 25.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2018. 4. 27.)

II. 권고 내용

2. 경찰은 헌법질서에 반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정보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한다.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파견과 상시출입 등의 방법으로 하는 동향 파악, 사찰은 즉각 중단하며, 기구와 인력은 이에 맞게 대폭 축소한다.

①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671호) 제14조(정보국)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㉞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5호)는 정부 차원의 협의·조정을 통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던 바, 위 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5호(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는 ‘18년 限 관계부처(부서) 업무 협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정·이관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0. 12.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신원조사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음.

신원조사 또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된 정보 수집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과도한 경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8. 12. 27.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일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이 아닌 해당 임용기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신원조사를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그에 따른 법령에서 업무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2020. 12. 3.)

- 특히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21. 3. 23.)에 신설된 제8조의2(정보의 수집)에서는 경찰의 수집 대상 정보를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였음. 따라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이 없는 정책정보는 이 법에 따른 수집대상이 될수 없음에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이를 포함한 것은 중대한 법적 흠결에 해당함.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 이후 경찰청이 입안한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2020. 12. 16.)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은 ▲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최소침해)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평가를 내렸음. 제정안은 대통령령 초안에서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등 일부 작구를 수정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여전히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 업무를 정보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권한의 위탁을 통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의 정보수집과 직결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위탁 업무로서 행해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의 범위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경찰의 직무 범위 자체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내용을 반영하지 않음.

-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결정(2020. 12. 29.)을 통해 대통령령에서 신원조사 관련 내용의 삭제를 권고함.

본 건 개정시행령안의 신원조사 관련 내용의 존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것이며 경찰청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약속도 스스로 어긴 것이다. 따라서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수집은 대상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이며, 경찰이 수행할 업무는 아니므로 본 건 개정령안에서 삭제하는 [것] 타당하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2020. 12. 29.)

- 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경찰청은 정보경찰이 신원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현행 보안업무규정을 들며 “대안없이 경찰이 업무를 중단할 경우, 고유기관인 국정원이 모두 수행하게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입장임(경찰청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견). 그러나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이라기 보기 어렵고 대상자 사찰로 이어지기 쉬운 신원조사 업무에 대하여 국민에게 국정원이나 정보경찰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하여야 마땅함.
- 결론적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그에 대한 경찰청 스스로의 계획,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및 최근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취지와 위배되는 제5조 제9호 및 관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제6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함.

집회시위 관련 정보의 삭제 요구

-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에 대한 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5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공공갈등·다중운집으로 인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 더불어 관련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은 공공안녕정보국장의 직무로 다음을 규정하였음.

4.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집회시위와 관련한 정보 활동을 다른 부서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였던 바, 위 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경찰위원회 권고 25.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2018. 4. 27.)

II. 권고 내용

2. 경찰은 헌법질서에 반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정보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한다.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파견과 상시출입 등의 방법으로 하는 동향 파악, 사찰은 즉각 중단하며, 기구와 인력은 이에 맞게 대폭 축소한다.

①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671호) 제14조(정보국)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㉞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4호) 업무를 조정하여 경비 등 다른 부서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② 현재 정보기능의 업무 중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대외협력과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는 경찰청의 다른 부서로 이관을 추진한다.

-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던 바, 위 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는 '18년 限 관계부처(부서) 업무 협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정·이관 ...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는 '19년 限 조정·이관 추진

- 특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공갈등이나 다중운집을 이유로 인권침해 사실을 밝힌 아래 사건들에서 정보경찰은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찰, 협박 등의 역할을 해온 사실이 확인됨. 진상조사위는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불법사찰, 회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에서도 정보경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됨. 정보경찰이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여故염호석의 장례에 개입하여 가족에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종용하고, 합의시도를 주선한 사실과 가족장을 치르기 위해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폭력적으로 조합원들을 진압한 사실이 드러남.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는 한전과 정보관, 경비인력 간에 수시로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하면서 정보관들은 반대 활동을 주도하는 주민들을 '강성주민'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관찰과 순화, 설득이 상시 업무임이 드러남. 정보관들은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고, 주민들에게 자녀의 입사로 회유하거나 회사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함. 반대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채증활동을 하고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일도 확인됨. 또한 송전탑 건설로 사망한 주민들에 대한 사인을 축소한 것도 정보경찰이었음.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서는 경찰(제주청 정보과장, 정보관)·해군·국정원·제주도 유관기관(제주도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계장, 서귀포시장 등)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했으며, 경찰은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됨. 제주지방경찰청 정보과 주관하에 경찰 대응팀을 운영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뒷받침하는 것을 경찰의 임무로 함.

- 이후 경찰청이 입안한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2020. 12. 16.)는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는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최소 침해)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평가를 내렸음. 제정안은 대통령령 초안에서 '안전·질서유지' 등 일부 작구를 수정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여전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집회·시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집회신고

시 작성한 개인정보 등 질서·유지에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실의 확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평가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결정(2020. 12. 29.)을 통해 대통령령에서 공공갈등 및 다중운집 관련 정보의 삭제를 권고함.

‘공공갈등’은 정책입안 또는 집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정책공백으로 인한 불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경찰이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다.
‘다중운집’의 경우,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재난, 공공갈등과 같은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선제적 치안 활동 및 그에 수반되는 정보활동으로 바로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수집은 개정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경찰 본연의 임무 범위를 일탈할 우려가 강하므로 본 건 개정령안에서 삭제하는 타당하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2020. 12. 29.)

- 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경찰청은 경비국이 아니라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현장의 ‘위험’을 살피는 상황정보의 경비국 이관의 경우, 정보수집·집행 부서가 동일(정보수집+채증소음+진압)하게 되어 ▲ 집회주최 측과 대척점에 있는 집행부서 시각에서 집시법 해석 ▲ 집회. 시위 소통창구인 대화경찰 역할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임(경찰청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견). 그러나 같은 국가경찰 직제소속인 정보경찰이 경비국보다 독립적으로 ‘집회 주최 측과 대척점’에 서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으며, 대화경찰의 이면에서 정보경찰이 별도로 정보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는 경찰이 국민 앞에 표방한 ‘대화경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 결론적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그에 대한 경찰청 스스로의 계획,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위배되어,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다중운집에 교통 안전 등 경찰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정보경찰의 개입을 허용하는 제정안 제5조 제6호 및 관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함. 이 직무는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에서 담당하도록 이관하여야 함.

그밖의 문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는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최소 침해)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제7대 인권위원회(2020. 11. 27.)는 물론 제8대 인권위원회(2020. 12. 29.)도 반복하여 재검토를 권고한 바 이 규정을 반대함(제정안 제5조 제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절도’ 같은 민생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보 수집 범위의 확장으로 인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에 반하며,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재검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에 통보되는 죄종 대상자들에 국한하여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목적과 직결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

- 경찰의 정보활동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하면서도 마지막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위임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으므로 반대함(제정안 제5조 제10호).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는 이 규정이 임의적 정보 판단에 대한 포괄적 수권 규정으로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에 범죄정보 등을 직접 열거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도 위배되며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모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평가함.
- 경찰관이 정보활동 과정에서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제출이나 의견표명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대상자에게 ‘명시적 의사’라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반대함(제정안 제4조 제2항).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는 이 규정보다 더 완화된 대통령령 초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어서는 아니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에 대하여서도 “추상적인 일반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경찰 내부에서 사실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나아가 사실 확인에 있어 어떠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수집 주체인 경찰은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한계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모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2항에 위배된다고 평가함.

- 나아가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는 “경찰에 의해 수집되는 막대한 양의 정보에 대하여 관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정보 업무를 처리하도록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및 정보실명제와 정보이력제 등 적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정보 업무의 경찰 내외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의 신설을 권고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경찰청은 “기록물은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하며, 실명, 이력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입장이었으나(경찰청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견), 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의 경우 실명,이력 등 정보 활동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함.

신설 권고

③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정보 자료에는 작성한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한다.

⑥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정보 업무를 처리하도록 인권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정보실명제와 정보이력제 등 적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정보 업무의 경찰 내외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 및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

결론 : 제정안에 반대

- 정보경찰의 수많은 사찰, 선거개입, 인권침해를 낳은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를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제정안은 **이 정부에서 논의된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 개혁기구 및 인권기구의 권고는 물론 경찰청 스스로 밝힌 정보경찰 개혁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음.**
- 특히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경찰의 선거 개입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모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일탈함. 일부 작구 조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이들 문제 정보의 경우 특히 경찰의 직무에서 즉각적으로 삭제되어야 함. 또한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개입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직무는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으로 이관하여야 마땅함.
- 그럼에도 경찰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터 개정하여 정보 경찰의 직무에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조차도 일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규탄함.

경찰개혁네트워크
입법의견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발행일 2021. 03. 02
발행처 경찰개혁네트워크
담당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구글문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